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2126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나212683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12637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종중

피고, 항소인 1. B

2. C

변론 종결 2018. 2. 7.

판결 선고 2018. 2. 2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5가단126374 판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청구 취지

D에게, 경기 연천군 E 임야 12,397m²에 관하여, 피고 B은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5. 5. 11. 접수 59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C은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5. 8. 25. 접수 116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R의 대표권 유무

피고들은, 2008. 2. 18. 종중회의는 개최되었다는 자료도 없고 소집통지가 되지 않았으므로 위 종중회의에서 S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후 S이 소집한 2014. 2. 20. 종중회의는 정당한 소집권자에 의한 소집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2014. 2. 20.자 종중회의에서 R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R에게 대표권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종중총회의 결의라도 후에 적법하게 소집된 종중회의에서 이를 추인하면 이는 처음부터 유효로 된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등 참조). 또한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 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538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초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한

결의에 대하여 그 후에 다시 개최된 총회에서 위 종전 결의를 그대로 재인준하는 결의를 한 경우에는 설사 당초의 임원선임결의가 부존재 혹은 무효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총회가 당초 임원선임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이므로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사유는 이를 독립된 무효사유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만약 이를 무효사유로 본다면 최초의 임원선임결의의 무효로 인하여 연쇄적으로 그 후의 결의가 모두 무효로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해하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447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들의 주장처럼 2008. 2. 18. 종중회의가 개최되었다거나 위 총회 개최 당시 소집통지가 되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자료가 없기는 하다. 그런데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09. 2. 24.자 원고의 총회 회의록 중 '경과보고'란에는 2008. 2. 18.자 종중회의에서 S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2012. 2. 2.자 및 2013. 2. 20.자 각 정기총회 회의록에도 S이 회장으로서는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갑 제31호증의 1, 제32호증의 1)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S의 회장 지위를 부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설령 피고들 주장대로 S을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부적법하여 연쇄적으로 2014. 2. 20.자 종중회의에서 R을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역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지라도,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3, 갑 제28호증의 1 내지 6, 갑 제33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20. '종전 회장단의 임기만료에 따라 R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고(갑 제12호증, 갑 제33호증의 1, 2), 2016. 2.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으며(갑 제15호증), 2016. 10. 28. 이 사건 소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고(갑 제25호증의 1), 2017. 2. 20. R을 회장으로 하는 회장단의 3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R을 회장으로 다시 선출하고 이 사건 소제기를 재추인하는 결의를 한 사실(갑 제28호증의 2)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R이 2017. 2. 20.자 정기총회에서 새롭게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종래 R을 회장으로 선임한 2014. 2. 20.자 결의에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R으로서는 원고를 적법하게 대표할 회장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피고 C이 선의의 제3자라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C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피고 앞으로의 가등기는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그 무효는 누구에게 대하여서도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피고 C의 선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진환

판사김지나

판사박은희